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준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972
----------	-------

발의연월일 : 2025. 6. 20.

발 의 자 : 박준태 · 박충권 · 조지연
조배숙 · 곽규택 · 추경호
장동혁 · 조경태 · 송석준
김용태 · 최수진 · 임종득
구자근 · 강대식 · 인요한
유상범 · 김선교 · 배준영
김희정 · 이종배 의원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청문제도는 고위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심사하여 직무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음.

현행법은 임명동의안 등을 국회에 제출할 때 후보자의 학업 · 직업 · 경력, 병역신고사항, 재산 및 납세 실적, 범죄경력 등 최소한의 증빙 서류만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실질적인 자질 검증을 위한 자료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또한 인사청문 과정에서 청문위원들이 공직후보자의 검증에 필수적인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후보자나 관련 기관이 불성실하게 제출하거

나 제출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반복되어,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있음.

이에 인사청문회에 첨부해야 할 증빙서류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료 제출 의무를 공직후보자 본인에게도 명확히 부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보다 충실하고 투명하게 공직후보자의 청렴성과 적격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등).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출입국에 관한 사항

7. 외국환거래에 관한 사항

제12조제1항 중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를 “공직후보자 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거나 제2항 단서에 따른 소명을 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전단 중 “기관은 제2항”을 “공직후보자 또는 기관은 제3항”으로, “제출하지 아니한”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소명하지 아니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기관이”를 “공직후보자 또는 기관이”로, “제2항”을 “제3항”으로, “제출하지 아니한”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소명하지 아니한”으로, “해당 기관에 이를 경고”를 “공직후보자 또는 해당 기관에 이를 경고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로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자료제출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공직후보자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제5조(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① 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 안등에는 요청사유서 또는 의 장의 추천서와 다음 각호의 사 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 여야 한다.	① -----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u>6. 출입국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7. 외국환거래에 관한 사항</u>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자료제출요구) ① 위원회 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 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직후보 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u>국가기관 · 지방 자치단체</u> , 기타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자료제출요구) ① ----- ----- ----- ----- ----- <u>공직후보자</u> 또는 <u>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u> ----- ----- -----.
<u><신 설></u>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 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 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 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군사 ·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출된 사유서를 심사경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자료제출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공직후보자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제출하거나 제2항 단서에 따른 소명을 하여야 한다.

④ -----
-----공직후보자 또는 기관은 제3항-----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소명하지 아니한-----

--. -----

-----.

⑤ -----

--공직후보자 또는 기관이--제3항-----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에는 <u>해당 기관에 이를 경고할</u> 수 있다.	<u>소명하지 아니한</u>----- --<u>공직후보자 또는 해당 기관</u> <u>에 이를 경고하거나 관계자에</u> <u>대한 징계 등을 요구</u>----- --.
--	--